탄 원 서

제출 법원	사건 담당 재판부 귀중 [현재 재판부·사건번호 제출 전 확인]
대상자	김세운	대령	전 특수전사령부 특수작전항공단장
혐의 및 절차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관련
사건번호	_____ [공식 사건검색 후 기재]

1. 시민으로서 드리는 탄원

저는 피고인 김세운과 친족·친분 관계가 없는 시민이며 전체 재판기록을 직접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헬기 수송명령의 구체적인 목적과 항공단장의 인식를 사실과 증거로 구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피고인의 무고함이나 인품을 직접 알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중대한 사건일수록 개인의 실제 행위와 고의, 책임 범위를 엄정히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해 글을 올립니다.

2. 현재 확인되는 사건 경과

특검은 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 병력의 헬기 수송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했고 공동사건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군 징계로 파면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특검은 국회로 투입될 특전사 병력의 헬기 수송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송 목적에 대한 개인의 인식은 독립적으로 입증돼야 합니다.

3. 개인별로 가려야 할 사실

항공 수송 명령을 누가 발령하고 승인했는지, 항공단장이 인지한 탑승 부대의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비행계획·이륙 및 착륙 기록·무전과 임무 변경 여부를 대비해 주십시오.

4. 반대되는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 주십시오

항공전력 수송이라는 물리적 기여가 어느 범위에서 범죄 실행에 연결됐는지, 일반적인 수송 임무를 넘어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과 참여 의사가 있었는지를 법정 증거로 판단해 주십시오.

5. 적용 법률과 판단 요소

형법 제87조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의 유형 구별) /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한 문제입니다. 항공편의 안전·운항 업무와 위헌적 강제력 행사를 지원한다는 인식하의 핵심 수송 업무는 같지 않습니다. 항공단장에게 전달된 작전목적·명령 내용을 판단해야 합니다.

6. 사건기록에서 특정하여 확인할 증거

비행 명령서와 조종 기록, 승객·탑재 물품, 이륙·착륙 시각, 작전명·목적지 관련 교신 기록을 구별해 주십시오.

7.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의 예비적 양형 요청

병력을 직접 지휘한 사람과 수송 업무를 담당한 사람의 실제 행위는 구별됩니다. 수송 임무의 재량, 실제 계획 인지 여부, 위험 예견 가능성이 증명된다면 그 범위대로 양형을 개별화해 주십시오.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을 개별적으로 평가해 주시되, 확인되지 않은 반성·가족 관계·건강을 선처 사유로 추정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8. 결어

특히 헬기 수송명령의 구체적인 목적과 항공단장의 인식를 상세한 증거로 확인하시어, 피고인 김세운의 행위 중 고의와 구성요건의 증명이 부족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주십시오.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은 개인의 실제 역할에 상응하는 판단을 청합니다. 재판의 독립성과 증거에 따른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탄원인: _____ (서명 또는 인)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확인 가능한 공개 출처 (보도는 공판조서·판결문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026.09.18 뉴시스 | 군 관계자 8인 결심공판·구형·방정환 최후진술